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2. 6. 29.(수)

[www.jeonbuk.go.kr](http://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156호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 1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95호

전라북도 고시 제2022-156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 1. 목적 및 법적 근거

- (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2.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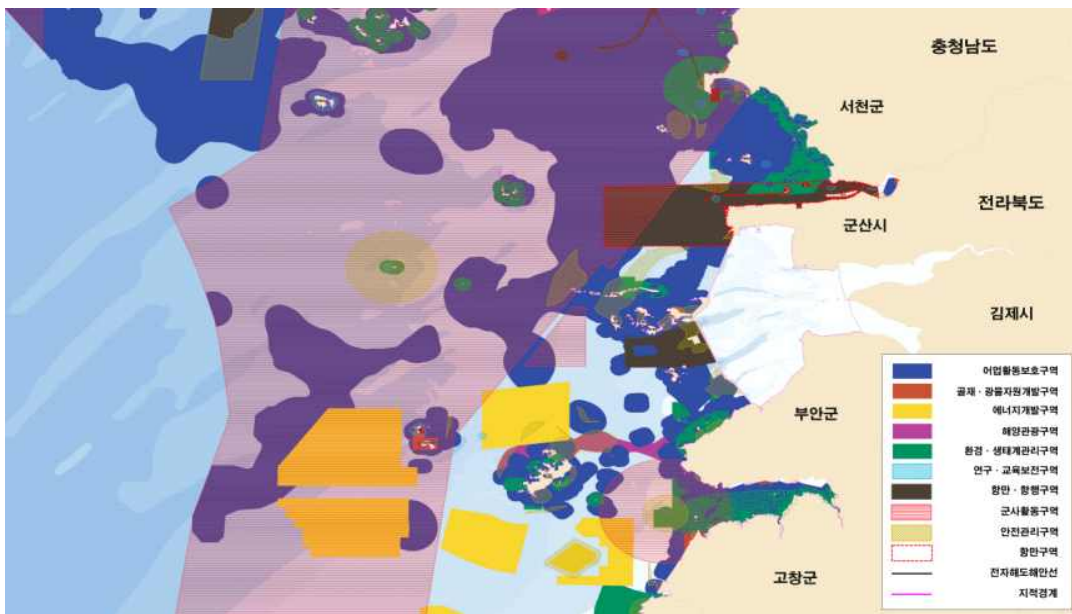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전라북도 부근 영해 5,265.36km<sup>2</sup>
  - (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74.79km<sup>2</sup>)
    - 전라북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5,090.57km<sup>2</sup>)
-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립 (법 부칙 제5조)

### 3. 해양용도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35.1%), 에너지개발구역(9.9%)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분		면적(km <sup>2</sup> )	비율(%)	
합 계		5,265.36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1,850.47	35.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9.64	0.18	
	에너지개발구역	523.61	9.94	
	해양관광구역	27.42	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46.71	2.79	
	항만·항행구역	224.26	4.2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0.56	0.20
		군사활동구역	3,381.68	64.23
		안전관리구역	334.24	6.35
		(중첩)*	(1,796.71)	(34.12)
	소계	4,711.88	89.49	
유보해역*		553.48	10.51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전라북도 누리집(https://www.jeonbuk.go.kr) ‘고시공고’ 참조
-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